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5. 9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  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문화관광과]

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문화관광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달서문화재단의 정체성 재정립과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안 제7조 및 안 제8조의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달서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.
- 또한, 안 제15조 결산서 제출기한 ‘4월말까지’ 를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‘2월말까지’ 로 조례안의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**

-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. 8. 1일부터 8.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5. 8. 27.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**

-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명칭을 변경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 개정을 추진하오니,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**감사합니다.**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 5093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5. 9. 3.  
제출자: 달서구청장  
(문화관광과장)

## 1. 제안이유

- 달서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명칭 변경(안 제7조, 안 제8조)

- (현행) 상임이사 → (개정) 대표이사

나.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(안 제15조)

- (현행) 4월말까지 → (개정) 2월말까지

## 3. 개정조례(안): 붙임 참조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5. 8. 1.~8. 21.)결과: 의견없음
- 2) 행정규제 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[붙임 1]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, 제7조제4항, 제7조제5항, 제8조제2항 중 “상임이사”를 “대표이사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4월말까지”를 “2월말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과 <u>상임이사</u>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<u>상임이사</u>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⑤ <u>상임이사</u>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</p>	<p>제10조(임원) ① -----<u>대표이사</u>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대표이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<u>대표이사</u>----- -----.</p>
<p>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상임이사</u>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대표이사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<u>4월말까지</u>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결산서의 제출) ----- ----- ----- <u>2월말까지</u> ----- -----.</p>

[붙임 3]

## 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9조(결산)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산총액, 부채규모, 종업원 수, 수익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